

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전문위원(자문·심의) 인력풀 모집 공고문

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는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에 따라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자문 및 심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위원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관계 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6년 7월

한국교육시설안전원 이사장

- 모집 기간: 2026. 7. 9.(목) ~ 2026. 7. 20.(월) 16:00까지
- 모집 구분: 자문위원 00명 내외, 심의위원 00명 내외
- 모집 분야: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, 교육분야
- 지원 방법: 이메일 접수(educheck@koies.or.kr)(방문, 우편 등 불가)
※ 자문위원 또는 심의위원 중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 가능

☐ 모집 및 신청기간 : 2026년 7월 9일(목) ~ 2026년 7월 20일(월) 16시까지

☐ 모집 구분 및 인원

- 자문위원: 00명 내외
- 심의위원: 00명 내외

※ 위원별 주요 역할, 자격요건 및 우대사항은 【첨부 1~3】 참조

☐ 모집 분야(자문·심의):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, 교육분야

☐ 위촉기간

- 자문위원: 위촉일로부터 2028년 2월 28일
- 심의위원: 위촉일로부터 2029년 4월 30일

※ 위촉기간은 내부 운영계획에 따라 조정가능

□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

○ 접수방법: 이메일 접수(방문 및 우편 접수 불가)

○ 접수처: educcheck@koies.or.kr

※ 메일 제목 예시

- 자문위원 지원: OO분야-홍길동-자문위원 신청
- 심의위원 지원: OO분야-홍길동-심의위원 신청

○ 제출방법: 신청서(엑셀, PDF) 및 증빙서류(PDF) 등 압축하여 1식으로 제출

- [자문위원 또는 심의위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](#)(중복신청 불가)
- 작성 시 유의사항 【첨부4】 참고

○ 제출서류(서류명 및 자료형식 준수)

- 신청서는 반드시 2026년도 지정 양식을 사용

※ 전년도 양식 또는 임의 수정 양식은 [위촉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](#)

구 분		연번	서류명	자료 형태	비 고
필수 제출		1	인력풀 등록신청서	엑셀 파일	
		2	인력풀 등록신청서 (서명본)	PDF	엑셀파일 출력 후 '서명'란에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파일 제출
해당시 제출	증빙자료* (응모자격 확인서류)	3	자격증 사본	PDF	- 신청서에 기재된 자격 증빙 ※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국토교통부 신고확인증 사본 제출
		4	경력증명서	PDF	- 신청서에 기재된 경력 증빙 ※ 실적관리 수탁기관(건설기술인협회, 대한건축사협회, 교육 행정정보시스템 등)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
		5	재직증명서	PDF	- 공고일 기준, 3개월 내 발급한 증명서
		6	학위증명서	PDF	- 신청서에 기재된 최종 학위 증빙
	우대사항 증빙자료	7	유사용역** 실적증명서	PDF	
		8	기타 증빙자료	PDF	- 위촉장, 위촉 공문, 위원회 참여실적 등 우대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제출

* 증빙자료는 신청서에 기재한 자격, 경력, 재직, 학위 등 [응모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](#)로, 해당 자격요건
및 기재사항에 따라 제출

☞ 하나의 증명서로 자격·경력·학위 등 여러 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로 갈음 가능하며,
증빙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검토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** 유사용역 실적 인정범위는 【첨부3】 참조

□ 위촉방법 및 결과 안내

○ 위촉방법: 서류심사 후 위원 구분별 별도 위촉

○ 검토사항: 지원 분야, 자격요건, 우대사항, 업무수요 등을 종합 검토

※ 전문위원 중 일부는 사전기획 자문 참여도, 전문성, 분야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수 사전기획 보고서 선정위원 등으로 위촉 가능

○ 결과 안내: 선정자에 한하여 이메일 등으로 개별 안내(8월 예정)

□ 기타 사항

○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 제출이 확인되는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, 자문·심의 등 위원 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, 부정청탁, 권한남용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위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위촉을 취소할 수 있음

○ 공고문 및 첨부자료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

○ 문의처: 한국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지원처 사전기획팀(☎ 02-781-6841)

첨부 1. 전문위원(심의·자문) 주요역할 및 검토내용

2. 전문위원(심의·자문) 자격요건

3. 우대사항 및 증빙자료 안내

4.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5.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명자료

첨부1 전문위원(자문·심의) 주요역할 및 검토내용

□ 전문위원(자문·심의) 주요역할

구 분		주요 역할	운영 방식	비 고
1	자문위원	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분야별 검토의견 및 자문 제공	서면자문	
2	심의위원	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결과 및 후속 발주계획 (설계공모 등) 등에 대한 심의 수행	대면심의 * 일부 서면검토 병행	

※ 본 모집에서의 전문위원은 ①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업무에 참여하는 자문위원과 ②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심의위원을 통칭함

□ 주요 검토내용

구분		분야	검토내용	
1	자문위원	건축계획 및 건축설계	사업추진	사업유형, 사업규모, 사업비, 사업기간, 인증·인허가 등 사업추진계획의 적정성
			건축·공간계획	배치, 평면·단면, 조닝, 동선, 기존시설 연계, 외부공간, 안전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 등
		교육	교육과정 연계	교육현황, 특색교육, 교수·학습방법, 사용자 참여결과와 공간구성 방향의 연계성 등
2	심의위원	건축계획 및 건축설계	검토결과 반영	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의견의 반영 여부 및 주요 보완사항의 후속 계획 반영 여부
			발주계획	설계지침, 과업설명서, 과업범위, 사업예산 범위 내 사업추진 가능성 등
		교육	학생배치·학교기능	학생 수 변화, 학급 수, 학교 지속가능성, 교육과정 반영 및 교육공간 구성의 적정성

※ 세부 검토내용은 사업유형, 안건 특성 및 검토 필요 사항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※ 심의위원회 세부 개요, 심의대상 및 업무 절차는 【첨부5】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심의위원회 설명자료 참고

첨부2

전문위원(자문·심의) 자격요건

- ※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, 위원별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
 ※ 실무경력 또는 교육경력은 자격·학위 취득 또는 직위 부여 전의 경력을 포함하여 산정

□ 자문위원 자격요건

구 분	자격요건	지원 분야
자 격	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건축계획,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	건축계획·설계
대 학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, 건축설계 또는 교육(공학)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	건축계획·설계 교육
연구기관	건축, 교육 관련 공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건축, 교육(공학)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	
교육 공무원	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5년 이상 재직 중인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육공무원(교원·장학사·장학관·교육연구사 등) 으로서, 교육시설 사전기획 관련 업무(교육과정 연계 공간기획 등)에 참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	교육
기 타	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인정한 자	해당 분야

□ 심의위원 자격요건

구 분	자격요건	지원 분야
자 격	「건축사법」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으로서 건축계획, 건축설계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	건축계획·설계
대 학	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건축계획, 건축설계 또는 교육(공학)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교육경력 이 있는 사람	건축계획·설계, 교육
연구기관	건축, 교육 관련 공인 연구기관에 재직 중인 박사학위 소지자 로서 건축, 교육(공학)분야에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 이 있는 사람	
교육 공무원	교육기관,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10년 이상 재직 중인 「교육공무원법」에 따른 교육공무원(교원·장학사·장학관·교육연구사 등) 으로서, 교육시설 사전기획 관련 업무(교육과정 연계 공간기획 등)에 참여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	교육
기 타	사전기획 적정성 검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이 인정한 자	해당 분야

첨부3 우대사항 및 증빙자료 안내

□ 우대사항

구 분	우대사항
교육이수	· 교육시설 관련 전문교육 또는 사전기획 전문가 교육과정 이수
유관사업 실적	· 교육시설* 사업(연면적 1,700㎡ 이상 신축, 증축, 개축, 대수선)의 사전기획용역·건축설계 용역 수행 실적 · 공간재구조화사업 등에서 교육기획가, 사용자 참여설계, 교육과정 연계 공간기획 참여 경험
위원회 참여	· 공공건축심의위원회, 설계공모심의위원회 등 유사 위원회 참여 경험
연구·개발 실적	· 교육시설 관련 게재 논문(학위논문 제외), 자문, 연구, 지침·자료 개발 등 유관 실적

* 「교육시설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시설 또는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제10호가목에 따른 용도 “교육연구시설-학교(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등)”에 해당되는 실적만 인정

※ 우대사항 관련 실적은 공고일 기준 **최근 5년 이내 실적 인정**

※ 우대사항은 제출자료로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종합 검토하며, 특정 항목 충족 여부만으로 선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님

※ 세부 인정 여부는 제출자료 검토 결과에 따름

□ 증빙자료 예시

구 분	증빙자료
자 격	자격증 사본
재 직	재직증명서
경력, 실적	경력증명서, 실적증명서
학 위	(최종)학위증명서
위원회 참여	위촉장, 위촉 공문, 홈페이지 위원 명단 공개화면 등
교육이수	수료증, 이수확인서 등
연구실적	논문, 연구보고서, 발간물 표지 및 참여 사실 확인자료 등

첨부4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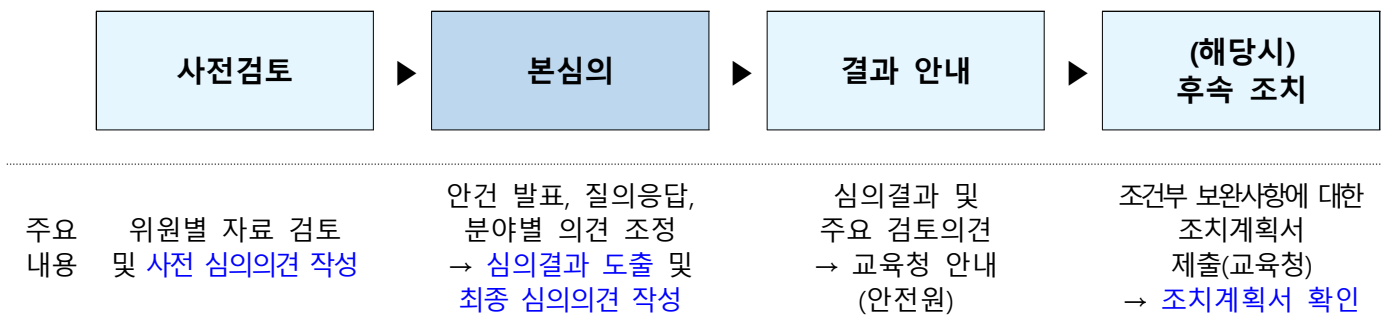
- ※ 신청서에 기재한 사항은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, 하나의 증명서로 여러 항목의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해당 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음
- ※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사항은 검토 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

- 필수 입력사항(*)은 누락 없이 작성
- 지원 구분은 자문위원 또는 심의위원 중 하나만 선택
 - 자문위원과 심의위원은 중복신청 불가
- 지원 분야는 전공, 자격, 주요 경력 및 현재 담당업무 등을 종합하여 선택
- 학력 사항은 대학 이상의 학력을 중심으로 작성
 - 학위는 '학사·석사·박사·기타', 졸업 구분은 '졸업·수료·기타'로 구분하여 작성
- 자격 사항은 국가공인기관이 발급한 자격증에 한하여 작성
 - 종목 및 등급은 기술사(건축사), 기사, 산업기사 등의 상위등급 순으로 기재
- 경력사항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주요 직무 중심으로 작성
 - 실제 근무기간, 소속기관, 직위 및 담당업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재
 - 경력증명서는 지원 분야, 담당업무 및 참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출
 - ※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제출 시 사업명, 참여기간, 직무분야, 전문분야 및 담당업무가 확인되는 관련 페이지를 포함하여 제출
 - 재직증명서로 경력사항을 증빙하는 경우 담당업무가 확인 가능하도록 제출
- 위원회 참여실적은 지원 분야와 관련된 실적 중심으로 작성
- 교육이수, 연구실적, 용역실적 등은 증빙 가능한 사항 중심으로 작성
 - 교육이수는 수료증 또는 이수확인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
 - 연구실적은 논문, 연구보고서, 발간물 등 참여 사실 확인이 가능한 자료 제출
 - 학위논문은 연구실적에서 제외

□ 심의위원회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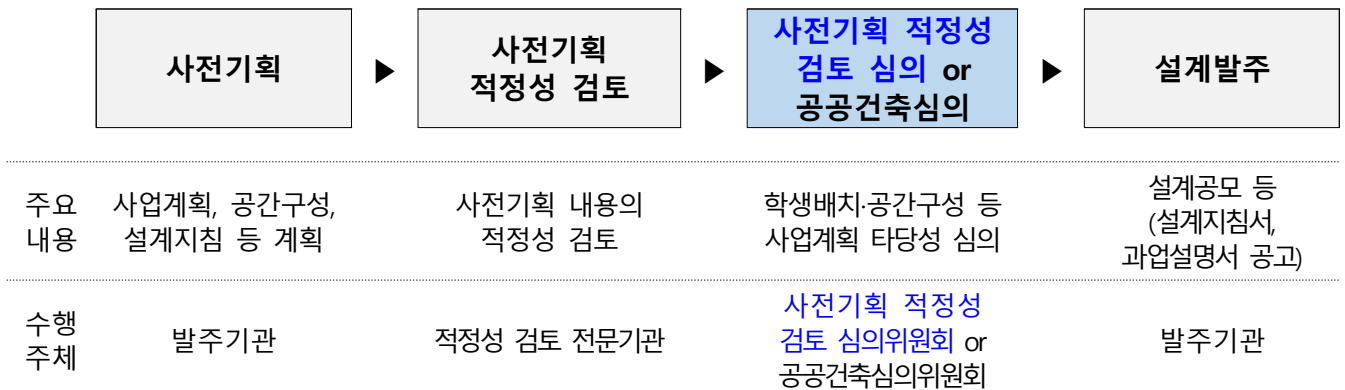
- (목적) 교육시설 사업 초기 단계에서 사전기획 결과와 적정성 검토 의견의 후속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, 사업기획 내용의 지속성과 설계발주 단계의 연계성 확보
- (추진 근거) 「공간재구조화사업 업무 지침」(교육부, 2025. 7. 시행)
- (심의 대상) 공간재구조화사업 추진 중이며, 「교육시설법」에 따른 사전기획 및 적정성 검토를 완료한 공·사립학교
- (심의 진행시기)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완료 후 설계용역 입찰공고 전
- (심의 주요내용) ①적정성 검토 결과 반영 여부, ②설계지침·과업범위 등 발주계획의 적정성, ③학교시설 관련 사항 등(학생배치계획, 공간계획 등)

□ 심의과정(위원 기준)



○ (참고)공간재구조화사업 사전기획 업무절차

- 사립학교(추정 설계비 1억원 이상)



※ 공간재구조화사업으로 교육청 재원이 투입되는 사립학교의 경우 공공건축심의 또는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심의 진행 의무적으로 추진(공간재구조화사업 업무 지침(교육부, '25. 7. 시행))